2023년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

1. 편의제공 대상

- 2023년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의한 **상이등급 기준에 해당**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 - 시각·지체·뇌병변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2. 편의제공 신청절차

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, 본인의 해당 여부, 지원요건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



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**원서접수 시**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



구비서류 제출

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을 등기우편(익일특급) 또는 방문 제출

○ 제출기한: 2022. 3. 21.(화) ~ 3. 24.(금)

※ 제출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유효 [서류 제출처] : 응시한 관할지역 해당 지방우정청으로 송부 ※ 하지지체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가능

3. 편의지원 관련 유의사항

- 1. **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**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 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(정도)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- 2.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(2021. 3. 25. 이후 발급)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됩니다.
 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학인서도 인정됩니다.
 -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,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야 함)
- 3. 의사진단서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 - ※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예시된 각 **장애유형별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**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(밑줄 참조)을 누락됨 없이 진단서에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른 편의를 제공합니다.
- 4. 장애인 응시자는 별도의 편의제공 신청 없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5. 장애인 모집단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시험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※ 장애인 모집단위가 아닌 **일반 모집단위로 원서접수 시 시험시간 연장 불가**
- 6.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7.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붙임의 해당 서류 제출처로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등

■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미만인 자

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

-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택1
- 의사진단서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소견서 불인정)
- ※ 제출기한: 2023, 3, 24.(금) 우체국 등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- ※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
 - ① 두 눈의 교정시력(좌, 우 각각 명시)
 -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
 - ex) 상기인은 <u>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.1, 우0.2</u>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<u>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(A4 크기) 작성에</u> <u>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</u>
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

구비서류

- ▶ 확대문제책(A3 118%, A3 150%)
-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
-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- ▶ 시험시간 연장(1.2배): 80분 → 96분

■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

구비서류

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

-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택1
- ※ 제출기한: 2023. 3. 24.(금) 우체국 등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

- ▶ 확대문제책(A3 118%, A3 150%)
-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
-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■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舊 1~3급)·상이등급(1~3급)

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

-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택1
- 의사진단서: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 신청의 경우만 제출(소견서 불인정)
- ※ 제출기한: 2023. 3. 24.(금) 우체국 둥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- ※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
- 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
 -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
 - *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
-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
- ex)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손, 목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 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

구비서류

- ▶ 확대문제책(A3 118%, A3 150%)
-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
-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-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
- ▶ 시험시간 연장(1.2배): 80분 → 96분
- ▶ 대필지워
-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■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·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

|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

-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택1
- ※ 제출기한: 2023. 3. 24.(금) 우체국 둥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

- ▶ 확대문제책(A3 118%, A3 150%)
-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
-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■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舊 1~3급)·상이등급(1~3급)

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워본≫

- 장애인증명서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택1
-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(소견서 불인정)
- ※ 제출기한: 2023. 3. 24.(금) 우체국 등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- ※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
- 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
 - 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
 - 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
 - ex)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시간 연장 및 대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

구비서류

- ▶ 확대문제책(A3 118%, A3 150%)
-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
-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- ▶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
- ▶ 시험시간 연장(1.2배): 80분 → 96분
- ▶ 대필지원
-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■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舊 4~6급) · 상이등급(4~7급)

구비서류

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

-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택1
- ※ 제출기한: 2023. 3. 24.(금) 우체국 등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

- ▶ 확대문제책(A3 118%, A3 150%)
- ▶ 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
- ▶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
■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 등

기이 스키	ᆔᆫ	ᅲᅩ	0 2 1 2 1	ᆸ떠칭ᄉ	ለነ ጌ	구) 기	그리 그리 그는 시기 스티	ለበ ኔበ 🖽
지원요건	ハぉ	エー	중시에	콘센 밥이	갰	아시	시세상대인,	위신구

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

-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택1
- ※ 제출기한: 2023. 3. 24(금) 우체국 등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
≪임신부·과민성 대장(방광)증후군≫

- 구비서류 의사 소견서 1부
 - ※ 제출기한: 2023. 3. 24(금) 우체국 등기우편(익일특급) 소인분까지 인정
 - ※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
 - ex) 상기인은 임신()주, 필기시험 예정일(2023. ○. ○.)을 전·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
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

- ▶ 하지 지체장애인: 별도(저충)시험장(실) 배정 (좌석간격 조정)
- ▶ 임신부·과민성 대장(방광)증후군 :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,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- ▶ 휠체어 전용(높낮이 조절) 책상 제공

【지방우정청 주소 및 연락처】

우정청	주소	전화/팩스
서울지방우정청	서울시 종로구 종로6 (서린동 154-1)	02)6967-9141
NEMOTO 6	서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🕲 03187	0505-005-1110
 경인지방우정청	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-55(탑동 910)	031)8014-3256~7
6146T66	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🕲 16626	0505-005-1259
부산지방우정청	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(거제동 1473)	051)559-3235
	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② 47502	0505-005-1457
충청지방우정청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(둔산동 1408)	042)611-1273
	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🕲 35239	0505-005-1657
전남지방우정청	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(유촌동 840-3)	062)600-4733
	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② 61945	0505-005-1827
경북지방우정청	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(입석동 982-3)	053)940-1565
	경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② 41142	0505-005-1957
전북지방우정청	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(효자동2가 1245-4)	063)240-3742
연독시하다하하	전북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② 54966	0505-005-2107
가의되바이저처	원주시 서원대로 412(단구동 1513)	033)749-2042
강원지방우정청	강원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② 26485	0505-005-2197
제조기바이저처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(도남동 662)	064)800-5963
제주지방우정청 	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② 63219	0505-005-2291